

2024학년도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본선거 시행규칙

제1조 (선거 일정)

별첨 <2024학년도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 일정표> 참조

제2조 (입후보자 자격심사)

1. 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입후보자 등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후보 등록원 (소정 양식) 1부.

나. 재학증명서 각 1부.

다.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각서 (소정 양식) 1부.

마. 추천인 서명서 (소정 양식) 1부.

1) 총학생회 선거 입후보 시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서

2)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 입후보 시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서

바. 선거공약 및 상징문 1부.

사. 입후보자 소견문 각 1부. (인당 A4용지 1장 내외)

아. 명함판 사진, 선거운동본부 공식 명칭, 메인 컬러 2색.

1) RGB 및 컬러 코드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2) 흰색과 검은색은 사용 금지

자. 참관인 명단 1부.

1) 총·부학생회장 참관인 8인, 단과대학 학생회 회장·부회장 참관인 2인

2) 온라인 선거 시 선거운동본부당 2인

2. 입후보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총·부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교에 4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단, 재선거 시에는 5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 2) 전체학기 성적 평균 평점이 2.5 이상인 자.
- 3)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4)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5) 대의원회 상임위원은 그 직을 사퇴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자.
- 6)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제1장 제2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
- 7) 임기가 연임되지 않는 자.

나. 단과대학 학생회 회장·부회장 입후보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본 대학교에 4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단, 재선거 시에는 5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 2) 전체학기 성적 평균 평점이 2.5 이상인 자.
- 3)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4)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5) 대의원회 상임위원은 그 직을 사퇴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자.
- 6)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제1장 제2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
- 7) 임기가 연임되지 않는 자.

3. 입후보자 등록 후 제출 서류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입후보 등록을 취소한다.

제3조 (선거운동본부)

1.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부”라 칭한다)는 선거운동을 통해 해당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고 각 현안에 대한 의견표명·정책개발 등을 통해 회원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 형성에 도움을 주는 회원의 자발적 조직이다.
2.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원으로 구성하고, 이들을 선거운동본부원이라고 칭한다. 단,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3. 선거운동본부장 및 선거운동원은 본회 또는 해당 기구 회원이어야 한다. 또한 선거운동본부에서 중선관위에 제기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후보자는 반드시 선거운동본부장과 동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선거운동본부 구성)

1.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원 중 1인을 선거운동본부장(이하 “선본부장”이라 칭한다)으로 내부 호선한다. 단, 선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 기간 중 업무를 속행할 수 없을 때 한하여 선본부장을 다시 선출하고, 이를 즉시 중선관위에 보고한다.
2. 선본부장은 선거운동본부 발족과 동시에 재학증명서를 중선관위에 제출한다.
3.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본부원의 학과, 이름,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을 중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 가. 회원 이외의 사람
 - 나. 현 총·부학생회장, 현 단과대학 학생회 회장·부회장, 집행부, 현 학부(과/전공) 학생회장과 차기 학부(과/전공) 학생회장으로 임명된 자
 - 다. 당해 중앙선관위원과 단대선관위원
 - 라. 나, 다 항의 직을 사퇴한 자는 사퇴 처리가 중선관위에서 확인된 직후부터 선거운동본부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5. 선거운동본부는 최초 선거운동원 모집 이후 선거운동원을 추가할 수 있다.
단, 각 선본부는 추가된 선거운동원의 학과, 이름,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을 즉시 중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된 선거운동원은 중선관위의 심의 이후부터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6.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원이 사임한 경우, 지체 없이 중선관위에 통보해야 한다. 단, 선거운동원을 사임한 사람은 선거 기간 종료 전까지 공직에 임명 또는 선출될 수 없다.

제5조 (선거운동본부 업무 및 의무)

1. 선거운동본부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2. 선거운동본부는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을 파견하여 투·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단, 온라인 선거 시에는 개표참관인만 파견한다.
3.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선거운동본부는 본회 회칙, 선거 시행세칙 및 시행규칙, 중선관위 회의의 결정·합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선거운동)

1. 모든 사전선거운동을 금한다. 사전선거운동이란 후보자 확정 공고 이전에 본 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물의 배포·부착, 공식적인 정책선전, 공개적인 선거공약 추천 행위, 공개 선거운동원 모집 및 각종 여론조사 등을 의미한다.
2. 모든 선거운동은 후보자 확정 공고 이후부터 가능하다.
3. 추천인 서명 작업은 후보자의 등록 절차로 간주하여 사전선거운동에서 제외한다. 단, 추천인 서명서는 중선관위에서 제작한다.

제7조 (선거운동본부실 사용과 출입)

1. 선거운동본부실은 선거운동본부 발족일로부터 선거운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2. 선거운동본부실의 장소는 후보자가 정하되, 중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경선의 경우에는 단과대학 학생회실 사용을 금한다.
3. 선거운동본부원은 타 선거운동본부실에 출입할 수 없고, 선거운동원은 중선관위실에 출입할 수 없다.

제8조 (오프라인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이란 선거 운동복 착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물의 배포, 부착 등 기타 전반적인 홍보활동을 말한다.
2. 선거운동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지한다.
 - 가. 중선거위가 주관하는 유세 외의 독자적인 집회
(단, 강의실 유세는 개별 유세로 고려하여 제외)
 - 나. 투표를 강요하는 질문이나 행위
 - 다. 선거운동본부원 명단에 없는 자의 선거운동
 - 라. 학우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행위
 - 마.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
3. 선거운동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 가. 학사일정 상 시험 기간에 진행되는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한다. 위반할 시, 주의를 생략하고, 경고로 조치한다.
 - 나. 오프라인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할 시, 선거운동본부원은 선거 운동복을 착용해야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선거운동본부는 메인 컬러와 동일한 색상의 선거 운동복을 구매 전 승인받아야 한다.
 - 다.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운동복 승인 이후 반드시 동일한 제품으로 구매한 후 구매 사실을 중선거위에 알려야 한다.
 - 라. 선거운동본부원의 선거 운동복 환복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금한다.
 - 마. 오프라인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할 시, 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은 각 선거운동 본부당 2인 1조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단,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장은 예외로 둔다.
 - 바. 투표일의 선거운동은 당선 목적이 배제된 투표 독려만 허용한다.
 - 사. 선거운동본부원은 선거운동 시 유권자와의 대화 및 신체적 접촉을 금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원이 선거 운동복을 입지 않은 경우도 유권자로 간주한다.

제9조 (오프라인 홍보물)

1. 모든 홍보물은 배경색으로 타 선거운동본부의 메인 컬러를 사용할 수 없다.

2. 모든 홍보물은 중선관위에 접수된 선거운동본부 명칭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선본부는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없다.
3. 모든 홍보물에는 중선관위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 가. 모든 홍보물은 중선관위가 검토한 후,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 나. 모든 홍보물에는 적색의 중선관위 확인 도장을 찍는다.
 - 다. 오프라인 배포용 홍보물은 배포 전에 중선관위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
 - 라. 파손된 부착 홍보물은 즉시 회수하며, 중선관위의 허가 이후 폐기하여야 한다.
4. 모든 부착 홍보물은 부착 장소를 중선관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홍보물 부착 시 테이프, 스테플러, 타커만을 사용하며 페인트 벽, 유리문예의 부착을 금지한다.
5. 가게시판 설치에 중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온라인 홍보물)

1. 온라인 홍보물의 형식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으로 제한하고, SNS 라이브는 금지한다. 단, 단체채팅방에 보내는 홍보글 또한 온라인 홍보물로 간주한다.
2. 선거운동본부는 온라인 홍보물(커뮤니티, 게시판 등)의 내용을 중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중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내용은 배포할 수 없다.
3. 홍보물의 온라인 배포 시, 다음 각호의 유의 사항을 준수한다.
 - 가. 온라인 홍보물의 경우 유권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본 게시물은 중선관위의 심의를 준수합니다.'라는 내용을 홍보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 나. 중선관위의 심의를 받은 홍보물에 해당 문구가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 다. 중선관위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해당 문구를 삽입하여 배포해서는 안 된다.
 - 라. 중선관위의 심의를 받은 홍보물과 게시된 홍보물이 상이해서는 안 된다.
 - 마. 온라인 홍보물을 배포할 시 강요성 텍스트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SNS)

1.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홍보물의 게시는 중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받은 선거운동본부의 공식 계정만 허용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의 공식 계정은 비공개 계정이 아니어야 한다.
2. 선거운동본부원은 중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받은 선거운동본부 공식 계정의 게시물 공유만 가능하고, 선거운동본부원이 직접적으로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3. 선거운동본부의 공식 계정이 아닌 계정이 특정 선거운동본부의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경우, 중선관위는 이를 발견할 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4. 선거운동본부원은 투표 시작 시부터 투표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개인 SNS 계정으로 선거운동본부 공식 계정의 게시글 공유를 통해 투표를 독려할 수 있다.
5. 투표 기간에는 선거와 관련된 질의응답만 가능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선거운동본부의 공식 계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6. 선거운동본부원은 선본부에서 우선 발행한 홍보물 외 선거 독려와 관련된 어떠한 홍보물도 독자적으로 게시할 수 없다.

제12조 (단체채팅방)

1. 각 학과의 단체채팅방을 통한 카카오톡 홍보의 전권은 해당 학과의 학회장에게 있다.
2. 선본부에서 온라인 홍보와 관련하여 학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선본부장으로 제한하며, 어떠한 형식의 강요나 금품 전달이 있을 시, 주의를 생략하고, 경고로 처리한다.

3. 다음 각호의 상황에 대한 책임은 선거운동본부에게 있다.
 - 가. 중선관위의 심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누락 된 경우
 - 나. 중선관위의 심의를 받은 홍보물과 상이한 홍보물이 게시될 경우
 - 다. 중선관위의 심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이 게시되었을 경우
4. 선거운동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단체채팅방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시행한다.
 - 가. 유세 기간 전까지는 홍보물의 게시 횟수를 주 3회로 제한한다.
 - 나. 유세 및 투표 기간에는 홍보물을 게시할 때 1일 1회로 제한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단체채팅방에 참가하고 있는 학우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만약 학우들의 민원이 있을 시, 단체채팅방을 통한 홍보를 즉각 중단한다.

제13조 (유세)

1. 유세 행위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 및 기타 홍보를 포함하며, 각 선거운동본부 당 유세 시간은 1일 1회 30분 이내로 제한한다.
2. 유세는 오프라인 유세를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유세도 병행할 수 있다.
3. 유세가 대면일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 가. 각 선거운동본부는 유세 시작 10분 전에 유세 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 나. 유세 장소는 중선관위에서 정한다.
3. 온라인 유세를 희망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 가. 소견 발표 영상은 평일을 기준으로 유세 3일 전에 중선관위에 제출한다.
 - 나. 소견 발표 영상은 선거운동본부에서 제작하며, 교내 홈페이지의 대학생활 -> 학생활동 -> 학생자치기구 창에서 배포한다.
 - 다. 소견 발표 영상은 유세 기간부터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게시할 수 있다.

제14조 (선거비용)

1. 중선관위는 일정액의 후보자 지원금을 각 선거운동본부에게 지원하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개인적인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
2. 후보자 지원금은 각 단과대학 회원 수에 비례하여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원금은 선거운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선거운동본부는 상업적인 장소에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4.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 확정 공고일에 결산 증빙서류를 중선관위에 제출한다.

제15조 (선거인 명부)

1. 선거인 명부는 투표 2일 전까지 중선관위에서 작성 및 보관한다.
2. 선거인 명부는 수정 및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선관위에서 1부, 학생복지팀에서 1부 소지한다.
3. 유권자는 투표 전날까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4. 선거인 명부의 누락, 오기, 무자격자의 등재를 발견하였을 때 유권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가 인정된 경우 중선관위는 이를 수정한 후 그 결과를 유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 투표 기간 선거인 명부의 열람은 중선관위만 가능하며, 타인 열람은 금한다.
6. 선거인 명부는 투표 종료 후, 중선관위실로의 이동을 제외하고는 정해진 투표 장소를 벗어날 수 없다.

제16조 (참관인)

1. 참관인은 후보 등록 당시의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즉시 선거운동본부는 이를 서면으로 중선관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선거 당일 참관인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 배석하여야 하며, 참관인이 배석하지 않은 경우, 투표의 전 과정을 진행하지 않는다. 단, 자리의 배석 위치는 사전에 각 선본부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3. 참관인은 투표 당일 도장을 지참하여야 하며, 유권자가 사용하는 모든 투표용지의 지정된 곳에 날인 하여야 한다.
4. 참관인은 중선관위의 요구 시, 학생증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참관인은 첫날 투표 시작 전에 선거인 명부의 작성일자를 확인하며, 당일의 투표가 완료되면 중선관위와 함께 중선관위실로 투표함을 이송하여 밀봉한다.
6. 참관인은 마지막 날 투표 시작 전에 전날의 밀봉 상태를 확인한다. 당일의 투표가 완료되면 중선관위원과 함께 지정된 개표 장소로 투표함을 이송하여 개표의 전 과정에 참여한다.
7. 온라인 선거의 경우, 선거인 명부는 엑셀 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 (투표 장소)

1. 투표 장소는 투표일 5일 전에 중선관위에서 지정하며, 투표 장소의 변경 신청은 투표일 4일 전에 한한다. 이후, 투표 장소의 변경은 불허한다.
2. 투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투표 행위를 할 수 없다.
3. 투표 장소에는 중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지정한 홍보물을 제외한 모든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으며, 참관인을 제외한 선거운동본부원의 상주를 금한다.

4. 단, 온라인 선거 시에는 별도의 투표 장소를 규정하지 않는다.
5. 온라인 선거 시 투표 당일 각 선거운동본부는 가게시판에 QR코드를 부착할 수 있으며, QR코드와 부착 위치는 중선거구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제18조 (투표 시간)

1. 투표 시간은 투표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다.
2. 오프라인 선거 시에는 마감 시간이 지났더라도 투표하기 위해 투표소 내 대기 중인 사람만 투표가 가능하다. 단, 투표소 내 대기 중인 사람은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19조 (기표 절차)

1. 기표 절차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진행한다.
 - 가. 유권자는 신분증, 실물 학생증 및 모바일 학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인장을 지참하여 투표장 입장 시에 선거인 명부와 대조 날인 한다.
 - 나. 유권자는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고, 중선거구위원과 참관인의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투표함에 넣는다.
 - 다.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훼손하였을 경우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2. 단, 온라인 선거 시, 유권자는 샘플포털시스템 로그인 후, 설문조사를 통해 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제20조 (개표)

1. 투표가 끝나는 즉시 중선거구위원과 참관인은 지정된 개표장으로 투표함을 이송하여 개표 및 집계를 시작한다.

2. 총학생회 선거 개표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참관인 8인 이하, 중앙선관위원 12인 이하 및 언론사 2인 이하 입회하여 진행한다.
3.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 개표의 경우 각 선거운동본부의 참관인 2인 이하, 단대 선관위원 2인 이하, 중앙선관위원 2인 이하 및 언론사 2인 이하 입회한다.
4. 개표 순서는 아래와 같다.
 - 가. 중선관위원장의 집계 개시 선언
 - 나. 중선관위원과 각 참관인의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 집계
 - 다. 중선관위원과 각 참관인의 투표함 개봉 및 각 선본부의 타 선본부 투표용지 분류
 - 라. 취합된 투표용지를 중선관위원과 각 참관인이 집계
 - 마. 중선관위원의 무효표 집계
 - 바. 총 투표자 수, 유효표 및 무효표 수, 각 후보자별 득표수 집계
4. 단, 온라인 선거 시, 온라인 투표 준수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유권자는 투표율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1조 (경고)

1. 중선관위는 회의를 통하여 경고를 결정하고, 위반 근거와 결정 사항을 후보자에게 전달한 후 경고 처리한다. 또한 중선관위는 이 내용을 서면으로 공개한다.
 - 가. 총학생회 회칙 및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을 위반한 경우
 - 나. 본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 다. 이외 선거 진행에 있어 유권자에게 중대한 위협을 가한 경우
2.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선관위원장이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주의 내용을 선거운동본부에 전달한다.
3. 주의에 대하여 선거운동본부 측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고로 처리한다. 단, 주의 2회당 별도 통보 없이 경고 1회로 간주한다.

제22조 (입후보 자격 박탈)

1. 세 차례의 경고 발생 시, 중선관위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입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 이 경우, 중선관위는 세 차례의 경고 내용 및 각각에 대한 근거 자료, 자격 박탈과 관련한 회의록 등을 서면으로 공개한다.

제23조 (투표일의 연기)

기상 악화 등의 사유로 선거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중선관위의 의결에 따라 투표일을 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 (선거 종료 작업)

1. 각 선거운동본부는 당선 확정 이후 3일 이내에 선거 운동에 관한 모든 홍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 확정 공고일에 결산 증빙서류를 중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각 선거운동본부는 투표 종료 다음 날 정오까지 선거운동본부실을 본래의 상태로 비워야 한다.

제25조 (부칙)

1.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추후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 변경 사항은 중선관위 회의를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단대선관위가 총학생회 회칙,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및 본 규칙을 위반하거나, 선관위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선관위가 단대선관위를 대신한다.